

제 694 호
1979. 1. 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편집 : 문화정보관 김연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달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례

- 제 1302 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 중개정조례 ... 3
제 1303 호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4

◎ 고시

- 제 18호 :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5
제 19호 : 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및지적승인 6

◎ 공고

- 제 9호 : 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품수거및파기명령(처분)공고 6

◎ 사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입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218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79년 1월 9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02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및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서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과세면제대상)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자 (당해 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교부받은자를 포함한다)와 공공단체

또는 주택자금을 충자받은 주택소유자가 분양을 조건으로 1가구당 전용면적 20평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주택(아파트·연립주택 또는 칠단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건물(토지제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의 준공후 1년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
 2.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건축한 때
 3. 법령 또는 그에 의한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한 때
- 제 3조 및 제 4조를 삭제하고, 제 5조를 제 3조로 하되 "구청장"을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한다.

제 6조를 제 4조로 하되 제 1항중 "제 3조"를 "제 2조"로 한다.
제 7조를 제 5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p>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다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p> <p>③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당시 총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 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하여는 총전의 예에 의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시 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정상천</p> <p style="text-align: center;">1979년 1월 9일</p>	<p>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 개발구역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량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는 재 개발사업의 시행완료 공고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및 도시계 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 업 계획에 의한 인가조건에 위반 하거나, 법령 또는 그에 의한 조 례에 위반하여 건축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p> <p>1. 건축물의 재개발사업 시행자 2. 사업시행자로 부터 최초로 취 득하는 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소유자</p> <p>제 3조 (사무처리의 위임) ①이 조 례에 의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 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p> <p>제 4조 (면제신청) ①제 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서울특별시조례제 1303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p> <p>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재개발사 업을 촉진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조 (과세면제 대상)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p>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그 사업의 계획 및 원료사항을 과세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③ (제기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조례 제 846호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면제 및 불균일 평세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4)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당시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회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3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1977.3.16.)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파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6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고 등 학 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중구정동 1-8 일대	19,805坪 (5,991평)	기존 학교 및 수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8-6 제 694 호 시

보 1979.1.9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 호

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인다.

1979.1.17.

서울특별시장

○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수도	성동구구의동 160-1 일대	211,509坪 (63,981.2평)	
변경	"	"	202,987坪 (61,403.2평)	다니엘학원(정신박약아, 신체장애학원)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 호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상품수거
및 파기명령(처분) 공고

합격 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수거 및 파기명령(처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5 조 제 2 항

3.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함.

1979.1.17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3 항
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 결과 불

서울특별시장

제 694 호 시 보

1979.1.9

8-7

1. 처분대상업체 및 품목

업체명	소재지	품명	규격	불합격항목	처분내용
제일비누	영등포구 신정동 274-1	고형세탁비	센텀 1 4호	중량	수거및파기령
해양유지	양평동 3가 78	"	"	물분용량분, 중량	"
동성타이어	동대문구 용두동 127	제생타이어	900X20	인장강도신장을	"
서울공구	종로구 예지동 96 길 86	엔지	200%	최수별 형경도 기호 미표시	"
		"	150%	경도기호미표시	"
		라디오지	140%	최수, 경도	"
		플라이어	200%	최수자, 틈, 세 명구별 형경도	"
해동공구	중구 상림동 146-11 한동군	라디오지	140%	최수기, 농영구 별 형경도	"
한일브레이크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3-2 이종구	자동차용 클리치레이싱	시보레 8톤	두께및 미표시	"
			포드 750	"	"
			시보레 2.5톤	"	"
			시보레 1700	미 표시	수거령
			최열	두께및 미표시	수거및파기령
동양전기	강남구 풍납동 281 임택주	전전지	CM AAM 4D	내누액성 차	"

2. 수거및파기기간 : 79.1.17-79.2.16 (1개월간)

3. 처분사유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미달

9-8 제694호 시

보 1979.1.9

사령

◎ 1979.1.10

대구시
최경한
지방행정주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하수시설 1과 근무를 명함.

◎ 1979.1.11

천호출장소
박용용
시민파장지방행정사무관

원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함.